■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[별지 제17호서식]

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

확인대상	부 서 (직 위)	성 명	부패행위 인지여부 (인지/부지)
1. 직근 상급 지휘·감독자			
2.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·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, 해당부서 책임자			
3. 기타 관련 직원 (차상급 지휘·감독자, 타 부서 직원 등)			

감사(조사) 업무 담당자은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근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인지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.

감사(조사) 업무 담당자 : (인)

감사업무 담당 과장 : (인)

20 . . .